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17. 5. 23.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호

제출연월일: 2017. 5. 23.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3879호, 2016. 1.27. 공포, 2017.1.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구비서류 정비목록에 포함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제1호,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지 제1호서식 ~ 안 별지 제9호서식)
- 폐수종말처리장 → 공공폐수처리시설(안 제14조, 안 제17조제1항)
- 나. 구비서류인 건축물대장은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존재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2119(2017.3.23.).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과-15945(2017.3.24.).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예산담당관-2854(2017.3.22.).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2017. 3. 21.~ 2017. 4.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물관리정책과(041-635-4475)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를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장으로"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 중 "오·폐수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별표 2 중 "오·폐수종말 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논산시 농업용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논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3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자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다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⑥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⑨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 제2조제6호, 제3조, 제4조제3호, 제5조제목,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제1호~제6호, 제6조제목, 제6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제5호, 제7조제목,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3항, 제8조제목,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제4호, 제9조제목,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 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목,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목,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별표 1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녹색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①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①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년씩 세 번까지"를 "30년으로 한 번"으로 한다.

	소	관 부	,	성	명		
입	환	경	과	장	김	종	의
안	환	경 관	리 팀	장	김	호	규
자	담	Ę	}	자	손 (041	현 -746-	주 -5512)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bigcirc \quad AS = (F_{\mathcal{C}} - F_{\mathcal{G}}) \times (\frac{Qi}{Qt})$

-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 Fc : 처리시설 최종 소요비용

- Fg : 준공된 처리시설 설치소요비용(국고지원금)

- Qt : 신규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체 오염부하량

- Qi : 신규오염물질 배출업체 업소별 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신규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은 전액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가. 유지관리비

 $O BS = M \times (0.3(\frac{1}{n}) + 0.7(\frac{Qi}{Qt}))$

- BS :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 M: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비(직접경비+간접경비, 『BOD, CO D, SS』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운영비)+시설재투자적립 금

- n : 입주업체수

- Qt: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Qi: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 (2/1,000)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 지수

다.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1. 오 · 폐수 등의 유량산정
 - ㅇ 폐수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 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 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 을 준용한다.
 - ㅇ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 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 (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1.0 (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ㅇ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 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하수 유입구역 인구수 × 1인 급수량 × 0.8 (하수 전환율)
 -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ㅇ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등)의 측정 은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 후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0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 ℓ (기숙사는 200 mg/ ℓ)
 - SS 100 mg/ ℓ (기숙사는 200 mg/ 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 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있다.
 - BOD 200 mg/ ℓ COD 200 mg/ ℓ
 - S S $200 \text{ mg/} \ell$
 - 생활하수 채수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숭인신청서						
,1	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Ų.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종	주생산품				
사 업 장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 (동별)	부지면적	m²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등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mg/ℓ , COD: mg/ℓ , SS: mg/ℓ ,

 $T-N: mg/\ell, T-P: mg/\ell$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 4.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 및 조건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	포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기	재지		전화번호					
「논산시 공 · 설치 (변경) 승			부과·징수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년 월	월					
		신고인 :	(인)					
	귀 하							
3. 4. 5. 6.	사업장내 오 배수설비 평 배수설비와 사업장내 우 유량계, pH계	·폐수 집수 및 배면도 및 종·횡단도 폐수관거의 연결 7 수배제 계획	는 메획 두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숭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 및 조건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별지 제5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논산시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교	· 징수 조례」제5조제6 ⁵	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귀 하							
검사번호 제 호	배수실	설비 설치 완료 검사·	필중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월 신고인: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배수 [,]	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신 고 인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 -	수설비 사용 개시일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

[별지 제7-1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20 년도 (분기) 회계 (관) (항)	제 호 20 년도 제 호 (분기) 회계	제호 20 년도 제호 (월) 회계
(목) 일금 ₩ 부담근거 수량 BO COD SS T- N T-P m³/d mg/l mg/l mg/l mg/l mg/l	일금 ₩	일금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 례」제1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람.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 지함 년 월 일 ○○○장 서명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입기간 년 월 일 납입장소 OO은행 년 월 일	납부자	○○○장 서명 (납부자)
○○○장 서명 (납부자)	징수자 서명 취급자 서명	귀하
귀하	수입금 출납원 서명 기장 서명	

[별지 제7-2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mark>20 년도</mark> (분기) 회계	제 호 20 년도 제 호 (분기) 회계	제호 20 년도 (_월) 회계			
(관) (항)					
(목)					
일금 ₩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 지함 년 월 일	일금 ₩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람.	사업소장 서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사업소장 서명			
납입기간 년 월 일 납입장소 OO은행 년 월 일	납부자	(납부자)			
전 월 월 ○○○장 서명	징수자 서명 취급자 서명	(입구사) 귀하			
(납부자) 귀하	수입금 출납원 서명 가장 서명				

[별지 제8호서식]

			;	징수유예 :	(분할징수	-) 신	청서			
	상호 또	는 명칭								
신 고 인	성 (대	명 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지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의							 청금액		
ㅂ리크	ما حا		넍	금						
부담금	의 종류	월	년 분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 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 고인 :		(인)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NO.		독	Ž	<u>~</u>	장		
상 호					성 (대 표 :	명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		체 나		71-			체 닙	计 금 액	
L		체 납 기		신 	계		부 담	급	가 산 금
시설설치비	ון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위의 금역	색이 처	납되었으니	— 년	월	일까지	 수납/	기관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따라 귀하	의 재신	나니할 때는 「논신 산을 압류하게 ↓	됩니다	다.					조례」제30조이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u>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u>	<u>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제1조(목적)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	
에 따라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	공공폐수처리시
<u>설</u> 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	<u>설</u>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산업단지 및	1
농공단지 <u>폐수종말처리시설</u>	<u>공</u> 공폐수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논산시장을 말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량작업의 제한) 사업자	제14조(감량작업의 제한)
는 폴리에스테르 감량 등 감량	
작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을	

행하되 발생되는 감량 폐수를 <u>폐수종말처리장으로</u>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관리기관은 <u>폐수종말처리장</u>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제17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
<u>공공폐수처리시설</u>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숭인신청서				
시	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주생산품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 (동별)	부지면적 _{m²}		
승인 .	신청 사항			

쳙

행

1. 월간 일평균 폐수등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mg/ℓ , COD: mg/ℓ , SS: mg/ℓ ,

T-N: mg/ℓ , T-P: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논산시 <u>폐수종말처리시설</u> 운영 및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5.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u>공공폐수처리시설</u> 유	ဂို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주 소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착공예정일	
	건물면적 (동별)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등배출량 :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mg/ℓ , COD: T-N: mg/ℓ , T-P: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개

귀 하

구비서류 1.<삭제>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
-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 폐수 및 오수배출량
- 5. 월간 오수배출량 산

붙임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해당없음
 - 나. 추계결과 해당없음
- 3. 작성자

환경과장 김 종 의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7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9조(분묘설치기간)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세 번까지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참고 2

상위법령 개정 시행일

상위법령		115001	
개정전	개정후	시행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6.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6.4.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5.6.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2.23.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법	2016.11.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개정 2017.5.30.시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12.2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11.4.5.	

참고 3 중앙부처 개선사항 통보내용

조례명	관련조항	내용	개선사항	개선통보 중앙부처
논산시폐수 종말처리시 설운영및부 담금부과징 수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 리시설 유입처리(변 경)승인신청 서"	별지 제1호서식 중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	건축물대장 서식 삭제 <별지제1호서식>	뷔처자쟁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시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유료화장실 설치 · 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 르게 정한 조례 규 정을 삭제하여 법 령상 근거 없는 규 제를 폐지하고, 주 민의 부담 완화	법제처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 조제1항이 개정(2015.12.29. 공포 시행)되어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 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30년씩 1회 연장하도록 변경 하였으나, 조례에서 이를 반영 하지 않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항과 같이 분묘 설 치기간과 설치기간 연장기간을 각각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분묘 설치 기간 확대 및 연장 혜택을 주민이 받 을 수 있도록 개선	법제처